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10.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753호)	어기구의원	2025.12.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0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49호)	주철현의원	2026.05.22.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744호)	조경태의원	2026.07.03.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

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 기준 등을 정하여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법률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기준과 맞지 않고,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 기준이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극지해역 운항 선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국제협약과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이 남아 있고, 선원관리사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한편,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선원의 근로·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추어 선원 근로・보호 기준을 정비함(안 제61조의2제1항, 제62조제4항, 제91조제1항 및 제92조).

나.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갑판부와 기관부로 구분하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선원 자격기준을 마련함(안 제94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선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69조의2).

라.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관리사업 신고・수리의 하위규정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제1항제4호 삭제, 제112조제4항・제5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9조의2 신설).

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산전·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단서 중 “1주간에”를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중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선박소유자”로, “선장에게 본인의”를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항해당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유자”를 “선박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

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乘務定員”을 “最小乘務定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수의”를 “수 이상의”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산전·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4항 중 “해양항만관청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합하면”을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여성선원”을 “선원”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를 “일·가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승무정원증명서”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로 한다.

제144조제3항 중 “이사장과 감사는”을 “이사장은”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장에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제53조”를 “제53조”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염병----------.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생 략)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1. (현행과 같음) 2. 출산을 전후한----------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생 략)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소유자------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제공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⑥ (생 략) <신 설>	----------항해당직----------.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소유자----------. ⑥ (현행과 같음)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최소승무정원) ①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최소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최소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④ ----------최소승무정원----------수 이상의----------. ----------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적용범위) ①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1. ~ 4. (현행과 같음) ② ----------최소승무정원----------.
제69조(유급휴가) ① · ② (생략) ③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 ⑤ (생 략)	제69조(유급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산을 전후한----------.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생 략)	제73조(유급휴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	제91조(사용제한) ① ----------

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 <단서 삭제>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생 략)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2. ----------최소승무정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선원----------일·가정----------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1. ----------최소승무정원증명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임원) ① · ② (생 략)	제144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

	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73조(벌칙)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항----------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최소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벌칙) ① ----------제5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